"범법자 옹호법" 여론 역풍에 급제동

정치권도 부정적 기류…법사위 상정 유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 기습 처리를 놓고 일명 '청목회 사건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7일 이 법안의 국회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기세였으나 일반 시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자 신중 모드로 돌아간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런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밝혔고,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하겠다는 법사위 의원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은) 자기가 담당하는 상임위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놨다"며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반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정자법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상정된 개정안은 지나치다"며 "이 대로 상정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자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만큼 이르면 금주 법사위 심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되,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든지 아니면 3월 국회에서는 법사위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는 현행 정자법을 포함해 일명 '오세훈법' 자체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 실제로 자금수요가 많은 정치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정자법 개정 필요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은 옳다"면서 "국회의원이 10만원을 받는 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한나라당)도 "광범위한 해석으로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원포인트 개정을 했다"며 "앞으로 정자법이나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은 정개특위에서 맡아서 하고 정치자금개선소위는 임무를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들이 입법로비를 허용해 달라는 황당한 일이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내년 총선에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입법로비를 합법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실의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벌 피하려 법안 발의" "검찰 국회 길들이기 반발"

'청목회 사건' 당사자 강기정 행보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목회 로비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의 입법로비 의혹인 이른바 '청목회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조만간 법정에 서게 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우선 인터넷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게 아니면 자기가 처벌 안 받으려고 법 바꾸는 게 도대체 뭐냐' '자신의 뇌물죄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만들어 무죄 방면이라, 역시 강기정 답네요'라는 등의 비판 글이 쇄도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강 의원 행보를 겨냥,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당사자로, 청목회 입법로비보다 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7일 "평소 소신있는 행보를 해온 강 의원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발의 서명하고 그것도 부족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했다.

반면, 강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검찰이 국회의원 길들이기 하겠다는데 가만있으면 바보'라고 강 의원의 입장에 섰다.

전날 강 의원의 "검찰은 정치자금법의 미미한 점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국회를 길들이기 하려고 하면서 국회의원의 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은 범죄자로 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목회 사건이다"라는 홈페이지 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목회 사건 뇌물죄로 바꿔 공소 유지"

검찰, 처벌조항 무력화 입법 시도 정면 대응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을 무산시키려 하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뇌물 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뇌물 죄로 바꿔 공소유지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전국청원경찰친목회(청목회) 등 '입법로비' 사건의 사법처리 근거를 없애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면 일단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규식(민주당), 권경석(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입법로비 면죄부…대통령 거부권 검토" 청와대 초강경 대응

7일 청와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입법로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행자위의 정자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은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자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국회가 정자법 개정안을 밀어 붙인다면 상당한 민심의 반발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국회가 정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민심을 지렛대 삼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일체 거론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내세운 '공정사회'의 기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급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그만큼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마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결국 민심의 흐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이번엔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법로비의 길을 터주는 국회의 정치자금검 개정안을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 등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는 바,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